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10. 12



NT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 리 말 ..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신뢰받는 세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400만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연간 근로소득을 총결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들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과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여, 매월 납부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 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도입,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발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 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 12.

법인납세국장 재갈경배

차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_ 7

I 연말정산 들어가기

1. 연말정산이란?_ 12
2.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_ 13
3.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를 이용!_ 14
4.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하기_16
5.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_17
6.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_18

II 근로소득의 이해

1. 근로소득이란?_ 26
2. 일용근로소득이란?_ 28
3.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_ 30
4. 급여 중 비과세소득은?_ 32
5.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_ 33

III 소득공제의 이해

1. 근로소득공제_ 36

2. 인적공제_ 37
 - 기본공제_ 39
 - 추가공제_43
 - 다자녀 추가공제_ 45
3. 연금보험료공제_ 46
4. 특별공제_ 48
 - 보험료 공제_ 50
 - 의료비 공제_ 52
 - 교육비 공제_ 56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_ 61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_ 63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_ 64
 - 기부금 공제_ 71
5. 그 밖의 소득공제_ 75
 - 연금저축 공제_ 75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_ 77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_ 78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_ 81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_ 83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_ 88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_ 90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_ 91
6. 세액공제_ 92

IV 유형별 연말정산 맞춤 안내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_ 96
2.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_ 98
3.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_ 99

V 참고자료

1. 제출서식 작성 사례보기_ 106
 - 소득공제신고서_ 107
 - 의료비지급명세서_ 111
 - 기부금명세서_ 112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_ 114
2.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_ 116
3. 월급에서 매월 징수되는 세금은?_ 117
4.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하기_ 119
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세히 보기_ 120
6.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_ 126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11.1월 초)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11.1월)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11.2월) [근로자 → 회사]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 ('11.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11.2월) [회사 → 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11.3월)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정보 확인 ('11.1월 초)

- ◎ 근로자는 국세청 · 회사 등으로부터 '11년 1월 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공제 자료 제출시 주의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11.1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1.15일 Open 예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수정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시 유의사항

회사가 요청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공제금액을 기재하여 회사에 먼저 제출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완료 전까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본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회사에서 보관함)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11.2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기부금·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제출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신고서도 종이문서 출력 없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 소득공제 증명서류 및 소득공제신고서 보완 ('11.2월)

-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소득공제 증명서류 포함)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보완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11.2월 말)

-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1년 2월 말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11.3월 말)

-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 영수증 ⑥4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 ⑥5, ⑥6)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⑥7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이다.

I

연말정산 들어가기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 매월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 기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
 -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음
 -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3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를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지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

구분	공제항목	비고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교육비	초·중·고·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
	유지원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기타	소기업/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장기주식형저축	○
	기부금	◎

※ ○는 기존 제공 항목, ◎는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규 제공 예정 항목임.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하기

본인의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2004년 귀속부터 제공되므로 과거년도에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누락하여 추가로 공제 신청하는 경정청구, 고충청구 시에도 이용하면 편리

※ 계산결과 화면에서 산출과정보기를 클릭하면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계산내역 확인 가능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The screenshot shows the NT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국세청' (NTS) logo and various service links. Below this is a banner with a family illustration and the text '국민이 신뢰하는 신진업은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New businesses trusted by citizens are those that become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연말정산자동계산' (Year-end Tax Settlement Automatic Calculation). It features a grid of buttons for different years from 2004 to 2010, with 2010 selected. Below the grid, there are bullet point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2010 calculation, including a note about the tax rate and a link to the '기본사항' (Basic Information) table. The table has columns for '입력할 항목' (Input Item), '선택 또는 입력' (Select or Input), and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Item-specific Summary and Deduction Conditions). The '총급여액' (Total Salary) row is partially filled with '이 원' (this amount).

5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6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10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구분	소득금액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명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1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특별공제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의료비 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총급여액 3%</td> <td>(㉠+㉡+㉢) - (총급여액 3% - ㉣)</td> </tr> <tr> <td>㉣ >=총급여액 3%</td> <td>(㉠+㉡+㉢) + 적은금액[(㉣ - 총급여액 3%), 700만원]</td> </tr> </tbody> </table> <p>※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p>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 - 총급여액 3%), 7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할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특별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 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 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주택 자 금	월세액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300 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만원 한도 (최대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 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특별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 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50%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2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주(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08년 이전 투자</td> <td>소득금액의 50%</td> </tr> <tr> <td>'09년 이후 투자</td> <td>소득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충급여액 25%) × 20%(25%)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2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 화폐 사용금액 -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충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그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불입액× (연차별) 공제율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가입 1년차 불입액</td> <td>20%</td> </tr> <tr> <td>가입 2년차 불입액</td> <td>10%</td> </tr> <tr> <td>가입 3년차 불입액</td> <td>5%</td> </tr> </tbody> </table> <p>※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p>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산출세액</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50만원 초과</td> <td>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p>※ 세액공제한도</p> $\text{근로소득} \times \left(\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right)$ <p>·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p>									

II

근로소득의 이해



1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로금·공로금 등

유의 사항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부분

자주 묻는 질문

- ❖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에 해당
- ❖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소득 종류	주요 특징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

• 학교의 외부강사 소득구분

사 례	소득 구분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봄

❖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

구 분	소득 종류
근무 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근로소득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기타소득

2

일용근로소득이란?

- ▶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10만원)\} \times \text{세율}(8\%)] - \text{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 ▶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제출시기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	다음해 2월 말일

* 해당연도 소득을 12.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유의 사항

-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임

※ 민법 제160조 【역(歷)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자로서 그가 받는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임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대상 여부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괄 지급시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매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 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고용되어 일반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3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유의 사항

❖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지급
>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연말정산 이후 급여를 소급 인상하는 경우 귀속시기

-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의 급여로 보아 연말정산을 함



자주 묻는 질문

❖ 퇴직후 지급받은 성과급의 귀속시기

- 2009년 12월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2010년 3월에 성과급이 확정되어 지급한 경우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임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 연차휴가수당

-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 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임

❖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 성과급으로 받은 권리제한부주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 인수·합병으로 인한 위로금

-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봄

4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근로소득은 과세대상이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요~

※ 비과세소득 예시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 월 100만원(150만원)]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장기미취업자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비과세(매월 100만원 한도)

5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07년 귀속	과세표준	'08년 귀속	'09년 귀속	'10년 귀속
10백만원 이하	8%	12백만원 이하	8%	6%	6%
40백만원 이하	17%	46백만원 이하	17%	16%	15%
80백만원 이하	26%	88백만원 이하	26%	25%	24%
80백만원 초과	35%	88백만원 초과	35%	35%	35%

III

소득공제의 이해



1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개별 근로자가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text{근로소득금액} = \text{총급여액} * - \text{근로소득공제금액}$$

$$* \text{총급여액} = \text{연봉} - \text{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유의 사항

-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 하지 않음
-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됨
-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

2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유의 사항

❖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개요

구 분	내 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6세 이하, 출산·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손자, 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나, 6세 이하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남편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으나,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나이기준 초과 등으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공제대상 판정 시기

구 분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유의 사항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본공제 대상자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 소득금액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구 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금융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자주 묻는 질문

❖ 기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부터)

❖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사 례	답 변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배우자 소득 없음)	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공제 가능
2	군입대한 아들(만22세)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3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 (모두 소득 없음)	모두 공제 가능
4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 (소득 없음, 나이 65세)	올해 사망한 경우 공제 가능
5	이혼한 부부의 자녀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모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6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
7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생모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9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 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

주요 심판 사례

- 본인 : 여성 근로자로서 수도권 거주(조모와는 주민등록을 같이한 사실이 없음)
- 부모 : 지방에서 조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수원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음
- 동생 :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소득공제 신청현황	결 론	결정 이유
조모에 대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경제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부모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 • 본인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도 없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부모가 청구인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경제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여동생의 교육비를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명도 없음
본인에 대한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가 아님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1명당 연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200만원
부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6세이하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 입양자 · 위탁아동	1명당 연100만원
출산 · 입양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	1명당 연200만원

유의 사항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건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자주 묻는 질문

❖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질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 맞벌이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추가공제

- 한 아이에 대하여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해서 추가공제 가능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모도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공제금액
2명	연 50만원
3명 이상	연 [50만원 + (자녀수 - 2인) × 100만원]

유의 사항

- ❖ 손자·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 ❖ 맞벌이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한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 ❖ 부양가족 자녀 중 23세 자녀(장애인, 소득 없음)가 있는 경우
 -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나이요건 충족 필요)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함
 - 해당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한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유의 사항

❖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담금

- 2008년부터 퇴직연금부담금으로 공제 가능

❖ 2002. 1. 1.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

- 소급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자주 묻는 질문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소급기여금

-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3년 이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 소급기여금 공제 비율 □□

귀속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공제 비율	소득공제 되지 않음	납부금액의 50% 공제	납부금액의 100% 공제

❖ 반납금 공제 여부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특별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정금액에 대해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한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특별공제(표준공제)

▶ 특별공제의 종류와 공제 요건

항 목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소득요건	나이요건		
① 보험료공제	○	○	○	
② 의료비공제	×	×	○	
③ 교육비공제	○**	×	○	직계존속 제외
④ 주택자금공제			○	본인만
⑤ 기부금공제	○	○	×	본인·배우자· 직계비속
특별공제액	①~⑤의 합계액과 1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본인은 요건 제한 없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유의 사항

❖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비용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 ❖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근로자 1명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 가능
- ❖ 특별공제가 가능한 비용
 -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봄

자주 묻는 질문

- ❖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특별공제금액은 소득공제 가능
- ❖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
 -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공제시기 : 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유의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 ❖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 불가능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
-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불가능
- ❖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10.6월부터 '11.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10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 (월별로 안분하지 않음)
- ❖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
- ❖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공제대상 기간

- 해당연도 1.1~12.31 지출분



❖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증명서류		국세청 제공여부*
	영수증 명칭	발급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약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 기관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안경점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판매처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판매처 (임대처)	×

* 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 회사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공제 대상자 별로 해당 금액만 기재



자주 묻는 질문

-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 가능
- ❖ 카드매출전표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 불가능
 -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됨
-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등

-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형제들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형제들은 부담한 수술비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음
 -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
 -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진단서 발급비용
 -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 한도액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 유치원 중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 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¹⁾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²⁾ 특별법에 의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등

- 1)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2)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유의 사항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 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교육비 공제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제정산

❖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한도를 적용
 예)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0.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0.8월 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 (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 공제



자주 묻는 질문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
- 노인대학 수강료 등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음

❖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여부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초·중·고등 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사 전·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이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 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소득공제 해당 없음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 대학원 과정 교육비

- 대학원 과정은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 입학 전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다면, 입학 전 교육비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예능학교 실기 지도비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됨

❖ 학자금 대출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아 납부하였다면(학교 졸업 후 약정에 의해 상환) 교육비를 납부한 때 공제하며 대출금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당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특별공제금액은 소득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소득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통상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월세액 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유의 사항

❖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요건 폐지

-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주택자금공제 한도

구 분	공제한도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① + ② + ③ ≤ 300만원
② 월세액 소득공제	
③ 주택마련저축 공제	① + ② + ③ + ④ ≤ 1,000만원(1,500만원)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유의 사항

❖ 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1,000만원(1,50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 배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특례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 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1998.5.22 ~ 1999.12.31 취득 주택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	<p>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2003.1.1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p>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 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요건 (’06.1.1부터) 충족
주택양수자 인수	<p>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인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06.1.1 부터) 충족

◎ 관련 법률 개정 경과 조치

차 입 금	경과 조치
2000.10.31 이전 차입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 적용하지 않음
2003.12.31 이전 차입분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인 차입금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1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1,000만원 한도 공제
2005.12.31 이전 차입분	<p>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공제 >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분양권의 범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	
주택분양권 가격 요건	3억원 이하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 가격 산정 방법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다음과 같이 계산	
	청산금 납부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지급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차입금의 범위	<p>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은 그 차입일(차입요건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일 것 • 해당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할 것(2007.1.1 이후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공제 배제사유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유의 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 주택의 전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승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초과 여부 판단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 ❖ 2000.10.31. 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전환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참고]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

상 황	공제 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됨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 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주택분양권 중도매매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가 해당 분양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부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부금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 (순서대로 공제)

종 류	공제한도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공제액) × 50%
우리사주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공제액) ×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2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1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유의 사항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당해 근로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p>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 사립학교의 신축 · 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법인(비영리교육재단)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p>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장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 원격대학의 장

❖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p>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p>	<p>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p>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한국수양부모협회

❖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기부금 유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법정기부금
적십자사에 기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30% 한도 기부금

❖ 특별재해(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 특별재해 발생시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

❖ 기부금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기부금공제종류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 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가능 여부	이월공제 연 수
정치자금기부금	○	×	×	×	-
법정기부금	○	○	○	○	1년
특 레 공익신탁 기부금	○	○	○	○	3년
	그 외	○	○	○	2년
우리사주기부금	○	×	×	×	-
지정기부금	○	○	○	○	5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 ARS로 납부한 기부금

-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요청하면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

❖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

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비율	연간 불입액의 40%	연간 불입액의 100%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3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하여 300만원)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	과세하지 않음	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 min (①, ②, ③)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원 ③ 환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
추징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유의 사항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해지 해당 연도 불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함께 연금저축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 연간 최대 공제한도 372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이 혼용된 보험상품

- (개인)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이 혼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해당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 적용

*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납입증명서에 의해 보장성보험 보험료와 연금저축불입분이 구분되어 있어 확인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근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가입 대상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
기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 불입액 및 공제 한도

- 분기당 210만원까지 불입,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 중도해지

-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 또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매년 공제 받은 금액의 누계액에 대해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09.12.31. 이전에 청약주택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공제대상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임
다만,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 해도 동일세대로 봄

▶ 공제대상 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월납입액 1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공제금액 한도

- 연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 제출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유의 사항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됨

구 분	추 징 세 액	
	이자·배당소득 추징	소득공제액 추징('09.12.31 이전 가입분)
1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한도
1년 초과 5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한도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없음
추징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저축해지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만 추징배제 	

❖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

- '06.1.1. 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
 - ※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
- '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됨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 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09.12.31 이전 가입한 사람이 2010.1.1~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
- 2010.1.1 이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하나,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연도 중에 중도해지

-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음

❖ 선취판매수수료

-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상속주택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 판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개인투자조합이 출자 받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공제금액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30%('08년 이전 투자분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 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금액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유의 사항

❖ 출자 또는 투자방식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공제 방법

-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08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08년, '09년, '10년 중 어느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요건

- 투자신탁으로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투자조합 투자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text{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times \frac{\text{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text{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발급

구 분	발 급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 회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나이 제한 없음)
-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원의 수강료 중 지로 납부액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20%(25%)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공제금액 계산

- 공제금액 = ㉠ + ㉡

㉠ =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학원지
로납부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

㉡ = 초과금액* ×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5%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유의 사항

❖ 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포함됨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카드 사용분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 카드 종류별 공제비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액 : 사용액의 20% 공제
- 직불카드(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 사용액의 25% 공제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근로제공 기간(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 소득에서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

❖ 신문대금, 우유의 지로납부액

-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만 해당하며 신문대금, 우유 등에 대한 지로납부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 ~ 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등록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 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26 → 내선 2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 가능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09년 2월 4일 이후 지급 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다만, 월세액 소득 공제를 받는 금액은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1. 인터넷 신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주택월세신고 > 주택임차금(월세) 신고

2.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

월세
현금영수증
이것만은 꼭
알고받자!

1.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 됩니다.
3.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4. 2009. 2. 4 이후 월세 지급 분부터 해당됩니다.
5.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은 추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추가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불형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선불형 교통카드 등록 홈페이지 ◎

- 한국스마트카드(T-money) : www.t-money.co.kr
- 카드넷(대경카드) : www.kardnet.com
- myb카드 : www.mybi.co.kr
- 부산하나로카드 : www.busanhanaro.com

※ Upass카드(www.sbus.or.kr)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별도 발급 받아야 소득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근로 소득에서 공제

-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 개요
출연시 소득공제 > 자사주 취득시 과세 제외 > 자사주 인출시 근로 소득 과세(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적용)
- ▶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유의 사항

-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하는 때에 비과세 대상 주식으로 통지하면 향후 자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됨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의 경우
 -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가능

-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 인출

구 분	내 용
과세대상(인출금)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당해 법인이 과산선고를 받은 경우 0원)
소득구분	근로소득
수입시기	해당 자사주의 인출일
원천징수 방법	해당 법인이 인출금에 기본세율(6%~3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 * 인출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 의무 예탁기간의 다음날부터 2~4년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근로자가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금액

불입기간	소득공제	비 고
1년차	불입액의 20%	분기당 불입액 한도 300만원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	

※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계산합니다.

▶ 2009.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유의 사항

❖ 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과의 관계

-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별도로 장기주식형 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장기주식형저축 공제가 각각 가능
- 연금저축 공제 대상 펀드가 동시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 불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천만원 한도, 2010년까지)

$$\left[\begin{array}{l} \text{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text{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end{array} \right] \times 50\%$$

유의 사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업종특성,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10%이상 감소
 -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10%이상 감소
 -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50%이상 증가
-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자,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5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27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0만원) × 30% ※ 공제한도액 : 50만원(산출세액 125만원 이상)

▶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매월 징수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 정산)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정치자금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에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에 의해 과세된 과세연도(과세연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해 조차소득산출세액에 그 공제



유의 사항

❖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하는 때 다음해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text{납세조합세액 공제액} = \frac{\text{종합소득 산출세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10\%$$

$$\text{*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 = \frac{\text{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text{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 \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times \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98.1.1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택자금이자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 급여 수령시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그 행사한 월이 아닌 연말정산 하는 때에 신고시

- 납세조합이 행사월에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조합세액공제는 배제됨

IV

유형별 연말정산 맞춤안내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자녀 양육비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구분 \ 사례	사례1		사례2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과세대상급여	3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근로소득공제	11,750,000	10,500,000	11,750,000	10,500,000
본인관련 소득공제	7,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자녀관련 소득공제		7,000,000	7,000,000	
과세표준	16,250,000	500,000	9,250,000	7,500,000
세율	15%	6%	6%	6%
산출세액	1,357,500	30,000	555,000	450,000
근로세액공제	500,000	16,500	291,500	247,500
결정세액	857,500	13,500	263,500	202,500
전체 세액	871,000		466,000	

사례1과 사례2의 결정세액 차이 405,000원

※ 소득이 높은 본인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가 공제받을 때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부부 모두 6%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405,000원 이득

2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

총급여액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 (총급여액 = 전체 급여 - 비과세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시 월할 계산하지 않고 인별 요건 충족 시 공제
연금보험료 기부금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제공 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 근로기간 외 지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기부금 외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중(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소득임
-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 주한외교관 및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따라 연말정산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유의

거주자	비거주자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본인 등의 모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 적용

-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고,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 단일세율 과세특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 × 15%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 외국인 근로자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됨



유의 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비교

일반적인 경우	단일세율·분리과세 적용
급여총계(비과세포함)	급여총계 × 15%
- 비과세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하여 다음의 서류를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등)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이외 외국인은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사본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시민권자가 2년 계약으로 한국에 어학강사로 취업한 경우

- 가족이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어학강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 정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세액감면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세액 감면
-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규정 개정

구 분	종 전	개 정
대 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 기술집약적산업·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로 조세감면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근로하는 외국인 기술자 • 기술집약적산업·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감 면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제공 후 최초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제공 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다만,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유의 사항

❖ 외국인 기술자 범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 하는 자

- ❖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한해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

자주 묻는 질문

- ❖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이후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사례

'02.1.1 최초 입국시 3년간 근로제공하고 출국하고 '06.1.1 재차 입국하여 근로 제공한 경우 비과세기간
> '02.1.1부터 3년간 비과세, '06.1.1부터 1년간 비과세

- ❖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신청
 - 감면신청은 감면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므로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세액감면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면제신청서가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 확정신고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소득세 면제

V

참고자료



1

제출서식 작성 사례보기

- * 소득공제신고서
- * 의료비지급명세서
- * 기부금명세서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1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성명	금잔디	주민등록번호	680101-2111111
근무처명칭	봄씨네 죽	사업자등록번호	100-34-66789
세대주여부	세대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세대원 <input type="checkbox"/>	국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	10.01.01~10.12.31	감면기간	~
주거구분	거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비거주자 <input type="checkbox"/>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계코드	성명	인적공제 항목						자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부녀자	경로우대	출산·입양	장애인	6세이하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I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2 명)	4	1			1	국세청	2,600,000	2,200,000	3,200,000	20,000,000	1,000,000	3,000,000	200,000	
			1					기타	2,500,000			1,200,000			450,000	
	0	금잔디	○					국세청	1,400,000	1,200,000		18,000,000	1,000,000	2,000,000	200,000	
	1	(근로자 본인)	○					기타							400,000	
	2	구종열	○	○				국세청		1,000,000		2,000,000				
	1	370707-1111111						기타	2,000,000							
	4	구영현	○					국세청	600,000		3,200,000			1,000,000		
	1	990202-1222222						기타	500,000			1,200,000			50,000	
	4	구영주	○				○	국세청	600,000							
1	090703-4222222						기타									
	-						국세청									
							기타									

※ 참고사항

1.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법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 1~6제외) (소법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용합니다.

6. 신용카드 등에는 학원비, 치료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에는 「어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 보험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III.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2,600,000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 료 비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4,200,000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500,000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4,700,000		
	교 육 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비·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1 명)		공납금	3,200,000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3,200,000		
	주 택 자 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월세액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8,000,000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 부 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법정 기부금		기부금액	600,000			
	특례기부금(공익법인인탁 제외)		기부금액				
	공익법인인탁 특례기부금				작성방법 참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50,00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그 밖 의 소 득 공 제	연 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2,400,000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 계						
	주 택 마 련 저 축 소 득 공 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 자 조 합 출 자 공 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3,000,00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3,000,000			
	신 용 카 드 등 사 용 액 소 득 공 제	2008년 이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09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00,000			
		②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1,000,000			
공 제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3,000,000				
	④ 학원비 지로납부		1,200,000				
	계(①+②+③+④)			25,200,000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 (①×20%+②× 10%+③×5%)		
		②납입 2년차	1,000,000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1,000,000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식감액				작성방법참조		
기 타()							
V 세 액 공 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 액 공 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 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input type="checkbox"/> 정부간 협약 <input type="checkbox"/> 기술도입계약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p>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1년 1월 일 신고인 금 잔 디 (서명 또는 인) 금잔디</p>							
VI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3.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참고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및 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별시내죽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0	0	-	3	4	-	5	6	7	8	9
③ 성 명	금잔디	④ 주 민 등 록 번 호	6	8	0	1	0	1	-	2	1	1	1	1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 02-7676-7676)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우리사랑은행	123-12-12211	2,400,000		2,400,000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장기주택마련저축	영원한 은행	123-12-122334	3,000,000		1,200,000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부자은행	333-25-23561	2년	1,000,000		100,000									
※ 작성요령														
1.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부 금 명 세 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봄씨네죽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0	0	-	3	4	-	5	6	7	8	9
③ 성 명	금 잔 디	④ 주 민 등 록 번 호	6	8	0	1	0	1	-	2	1	1	1	1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 02-7676-7676)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2.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⑧ 기부 코드	⑨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 부 자			⑬ 기 부 내 역	
⑦ 유 형			⑩ 상 호(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건 수	금 액
정치자금	20								
법정기부금	10	현금	별달 고아원	100-82-00001	1	금잔디	680101-21111111	1	600,00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40	현금	○*청소년단체	100-82-00002	3	구영현	990202-12222222	1	50,00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 치 자 금	특 레 기부금	공익법인기부 신탁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코 드		10	20	30	31	40	41	42	50
합 계	650,000	600,000				50,000			
본 인	600,000	600,000							
배 우 자									
직계비속	50,000					50,000			

4.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⑭ 기부금액	⑮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⑯ 공제대상 금액(⑬-⑮)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 기부금을 특별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분 제외).

1. ㉞유형란 및 ㉞코드란 :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코드번호 “1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
 -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 “지정”, 코드번호 “40”
 -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 코드번호 “41”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 아.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2. ㉞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3. ㉞ 상호(법인명)란 :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㉞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함께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㉞ 상호(법인명)란과 ㉞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㉞ 기부내역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최대 1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㉞ 기부자란 :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㉞ 기부내역의 금액란 : 가지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8. ‘2.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익법인 기부신탁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30	31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년	-	2년	3년	-	5년	5년

10.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되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㉞기부금액, ㉞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㉞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닐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자성명		금잔디		생년월일		68.01.01			
근무처명칭		봄씨네죽		사업자등록번호		100-34-56789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학원비 지료 납부액	⑨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1	본인	금단지	68.01.01	국세청 자료	21,000,000	18,000,000	20,000,000		1,000,000
				그 밖의 자료					
1	2	구중열	37.07.07	국세청 자료	2,000,000	2,000,000			
				그 밖의 자료					
1	4	구영현	99.02.02	국세청 자료	1,000,000		1,000,000		
				그 밖의 자료	1,200,000			1,200,000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⑩ 합계액					25,200,000	24,200,000		1,00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⑪ 총급여	⑫ 총급여의 25% (⑪×25%)	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⑩ - ⑫)	⑭ 공제 가능금액	⑮ 공제한도액(3백만원과 ⑪×20% 중 적은 금액)	⑯ 소득공제금액 (⑭와 ⑮ 중 적은 금액)				
※ 공제가능금액 산출근거 (⑭)									
구분		⑰ 초과사용액 안분금액			⑱ 공제율	⑲ 공제가능금액(⑭×⑱)			
신용카드 등(⑥+⑦+⑧)		⑬ × [(⑥+⑦+⑧) / ⑩]			20%				
직불카드 (⑨)		⑬ × [⑨ / ⑩]			25%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1년 1월 일									
신청인 : 금잔디 (서명 또는 인) 금단지									
귀하									
구비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수수료
	2. 학원비 지료납부영수증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영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⑨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 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⑥ ~ ⑨란의 금액은 부동산입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⑪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⑫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 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분)
- 소득공제신고서(당초·수정분)
- 추가공제 증명서류

◎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적용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

◎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 '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기한('11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 가능
-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3

월급에서 매월 징수되는 세금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임
-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실제 금액이 아닌 일정금액을 일률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작은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추가 납부

◎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 수와 동일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에 의한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수로
 본 인 :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 “일반”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적용

사례 월급여(비과세 제외)가 333만원인 근로자의 간이세액표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이상	미만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3,320	3,340	147,290	128,540	79,800	73,550	61,480	57,110	48,360	43,980	35,230	31,290

* 월급여액 333만원이 속하는 구간을 조회

● 인터넷 조회화면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징수되는 세금은?

월급여액 : 원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 자녀포함) :

20세이하의 자녀수 : 일반(1인이하) 다자녀(2인이상)

● 사례별 원천징수세액 ●

사 례	공제대상 가족의 수	20세이하의 자녀수	원천징수세액
근로자	1인	-	147,290원
근로자, 배우자	2인	-	128,540원
근로자, 자녀 1명	2인	-	128,540원
근로자, 배우자, 어머니	3인	일 반	79,800원
근로자, 자녀 2명	3인	다자녀	73,550원
근로자, 배우자, 자녀2명	4인	다자녀	57,110원
근로자, 자녀 3명	4인	다자녀	57,110원
근로자, 배우자, 자녀3명	5인	다자녀	43,980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0. 2. 18 개정) 조회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근무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부터 조회 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조회

※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HomeTax 국세청 홈택스' and various user options. The main menu has '조회서비스' (Search Service) highlighted with an orange circle. Below the menu, the '조회서비스' page is displayed, featuring a search bar and a list of services. The '지급명세서' (Payment Statement) option is also highlighted with an orange circle. The page content includes a list of services and their details, such as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사용자의 세부자료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밀접한 호환이 없으며 또한 확인된 정보는 총방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홈페이지 주소 > 『www.yesone.go.kr』
-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 단, 근로자는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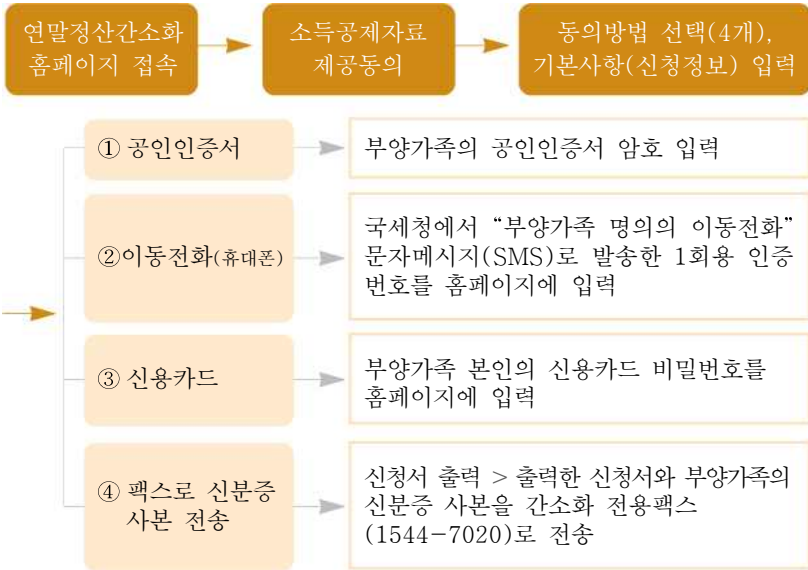
* 소득공제자료 조회

- ◎ 인터넷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이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 허용되는 공인인증서의 범위 확대
 - 종전에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등) 및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으로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① 전자정부 인증서(GPKI) 및 ② 이동전화에 저장하는 공인인증서로도 홈페이지 접속 및 서비스 애용 가능
- ◎ 부양가족의 동의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
 - 부양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 가능함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확대 •
-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동의하는 방법 •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인터넷 동의 신청방법(예시)

- ①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후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클릭
- ② 화면 좌측의 [동의신청방법]에서 방법 선택 후 클릭
- ③ 화면 우측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
- ④ 공인인증서 암호, 국세청에서 부양가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 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용 팩스(1544-7020)로 신청

- ① 홈페이지 접속 후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클릭
- ② [동의방법 선택]에서 “팩스 신청서 제출” 선택
- ③ 화면 우측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④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클릭
- ⑤ 출력한 신청서와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 ①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 ③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 ④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됩니다.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이 조회됨
- ⑤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의 경우에는 일자별 상세내역이 조회됨.
- ⑥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함

*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소득공제자료 활용

- ◎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한 경우, 이를 출력하여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며 소득공제신고서도 종이문서 출력 없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동의 취소] 신청서			
① 신청인(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정보주체)	성 명	구 종 열	주민등록번호	370707-1111111
	주 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02-7676-7676		
② 신청인의 소득공제 정보를 조회하는 자 (소득공제 신고를 하는 근로소득자)	성 명	금 잔 디	주민등록번호	680101-2111111
	주 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③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①)은 상기 근로소득자(②)의 <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④ 동의(취소)하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0)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 해당연도의 구분 > ▪ 동의 신청일이 3월 11일~12월 31일 : 신청일이 속한 연도 ▪ 동의 신청일이 1월 1일~3월 10일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신청인(①) 본인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본인의 소득공제 정보를 상기 근로소득자(②)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 취소]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10년 12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구 종 열 (인 또는 서명)</p> 세 무 서 장 귀하				
※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을 첨부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등)를 첨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신 청 인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성 명 : 금 잔 디</td> <td style="width: 5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주민등록번호 : 680101-2111111</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전화번호 : 02-7676-7676</td> </tr> </table>	○ 성 명 : 금 잔 디	○ 주민등록번호 : 680101-2111111	○ 전화번호 : 02-7676-7676	
○ 성 명 : 금 잔 디	○ 주민등록번호 : 680101-2111111				
○ 전화번호 : 02-7676-7676					
요 양 기 관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상 호 : ○○○과</td> <td style="width: 5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사업자등록번호 : 100-45-12345</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대표자 성명 : 홍 길 동</td> </tr> </table>	○ 상 호 : ○○○과	○ 사업자등록번호 : 100-45-12345	○ 대표자 성명 : 홍 길 동	
○ 상 호 : ○○○과	○ 사업자등록번호 : 100-45-12345				
○ 대표자 성명 : 홍 길 동					
<p>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10년 12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신청인(확인자) : 금 잔 디 (인) 금 잔 디</p> <p>○○ 세무서장 귀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금액 등 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귀하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0px; margin: 0 auto;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안 내 말 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인터넷 상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http://call.nts.go.kr>

▶ 연말정산 자료 확인

- 국세청 > www.nts.go.kr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현금영수증 등록·조회

- 현금영수증 > <http://현금영수증.kr>, www.taxsave.go.kr



전화

▶ (국번없이) 126

- 내선 1번 :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5번 : 전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색인

ARS(기부금)	74	맞별이	96
가족카드	84, 96	미용성형수술	52
간병인	55	반납금	47
간이세액표	12, 117~118	방과후학교	20
개인연금저축	75	벽지수당	32
개인투자조합	82	보육수당	32, 60
건강증진(의약품 구입) · 52, 110		보험료	50
경정청구	116	부당해고	31
고운맘카드	54	부양가족 동의	14, 120
공인인증서	14, 120	부양가족	39
과다공제	73	불우이웃(기부금 관련)	72
교과서대	56	비거주자	99
교복	56	비과세	32
교육비	56~60	사망	39
구급차(의료비공제여부)	55	사실혼	40
국가유공자	43	사이닝보너스	31
국민연금	46	산전후휴가급여	32
국민주택규모	61	산후조리(의료비 관련)	54
국외유학	20, 57	생모	41
군인(비과세적용 여부)	41	생산직근로자	32
귀속시기	30~31	선취판매수수료	80
급식비	56	성과급 상여	30~31
기본세율	33	세액계산	17
기부금	71~74	세액공제	92~94
기부금명세서	112	소급기여금	45
나이요건	39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77
노인장기요양보험	50	소득공제신고서	9
다자녀	45	소득요건	39~40
단체보장성보험	50	소액부징수	29
리스(신용카드공제 여부)	84	식대	32, 100

신용카드	83~87	종합소득세	116
실비변상(비과세 관련)	32	주거형편상 별거	39, 41
암환자	44	주식매수선택권	31
어학연수	59	주택마련저축	78~80
언어치료	55	주택임차차입금	6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40	중도 퇴직자	98
연구활동비	32	중도 해지	77, 80
연금저축	75~76	중증진료 등록확인증	44
연말정산간소화	14~15, 120	중증환자	43
연차수당	31	지역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 등)	47, 50
외국병원	55	직불카드	83~84
외국인근로자	100	직업능력개발훈련	15
외국인근로자세액감면	102	진단서 발급비용	55
외국인학교	56	청약저축	78, 80
우리사주조합	88~89	출산·입양	43
월세	63, 86	취업	43, 49
육아휴직	32	취학전 아동	15
의료비	52~55	태아	51
의료비지급명세서	111	퇴직연금	46, 75
일용근로소득	28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81
일직·숙직비	32	특별재난지역	73~74
입양자	39, 43	표본조사	73
자가운전보조비	32	표준공제	48
자녀양육비	43~44	학습지	58
자원봉사(기부금 관련)	73~74	학자금	59
장기미취업자	32	해고기간	27, 31
장기주식형저축	90	현금영수증	83~87
장기주택마련저축	78, 80	형제자매	39~40, 5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64~70	혼인	41, 49, 84
장애인	39, 43	환급금	9
전자문서	8	휴직	32, 49
정치자금기부금	71		

이 책자의 내용은 2010.11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의 발간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발행일자 2010년 12월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 원천세과장 송 기 봉
행정사무관 한 지 용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임 인 정



세번상담에서 연말정산까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 세미래

대한민국 세미래(税美來)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국세청의 공정세징'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발국민 캠페인입니다.